

2019. 12. 5. 10:00

제276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 8 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11월 11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달성군 재활용품 선별장 현대화에 따른 부지매입

재활용품 선별장이 노후화되고 재활용품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남에 따라 선별작업의 불편 및 적재공간의 협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접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재활용품 선별장 현대화를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함.

○ 화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상 어울림센터 신축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19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화원읍 천내리 일원이 선정됨.

본 사업내용 중 공공복지 서비스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상상 어울림센터를 신축하여 지역 육아복지 및 청년 창업의 거점시설로 운영하고자 함.

○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 매입

-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LH분양홍보관 일원 부지를 매입, ‘대구광역시 신청사 및 부속시설’의 용도로 대구시에 무상사용 허가하여, 새로운 대구 백년대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함.
-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대구시 신청사를 달성 화원에 유치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경쟁력 강화, 주민복지 증진은 물론, 대구 전체가 서남권으로 확장, 달성군을 중심으로 대구시 전체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됨.

○ 대구경찰특공대 이전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

달성군 소유 부지와 대구지방경찰청 소유의 구 화원면허시험장, 달성 교통초소, 달성 다사치안센터 부지를 교환하여, 우리 군 관내로 국가 기반시설인 경찰특공대를 이전·유치하고, 교환 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

○ 호텔 아젤리아 별관 증축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비슬산관광지 내 호텔 아젤리아의 별관을 증축하여 사용자의 편의증진 및 호텔의 기능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장래 예상되는 지역관광산업 수요 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

대구테크노폴리스 및 대구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으로 급증하는 달성 남부권(유가·현풍·구지) 주민들의 교육·문화·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함.

○ 화원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 낙동강변 화원유원지 및 사문진역사공원 일원에 매력적인 관광지 조성으로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산업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 화원유원지 및 사문진 일원의 체계적 개발로 달성군 대표 관광지로 조성코자 함.

□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 제17조(예산 확보 및 지원)

□ 주요골자

○ 달성군 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에 따른 부지매입

- 위 치 : 현풍읍 원교리 718-2, 720, 721, 1749-33번지(총 4필지)
- 대지면적 : 5,614m²
- 기 간 : 2020. 2. ~ 12.
- 사 업 비 : 30억 원(토지 및 건물 매입비)

○ 화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상 어울림센터 신축

- 위 치 : 화원읍 천내리 850-2, 860-2번지
- 규 모 : 부지면적 935m², 건물연면적 2,031.75m², 지하1층/지상5층
- 주요시설 : 문화창작소, 시민문화발굴단, 공방, 창업지원센터, 육아지원센터, 지하 주차장 등
- 사 업 비 : 86.6억 원(국비 43.3, 시비 21.65, 군비 21.65)
·건축공사 51억, 인테리어 10억, 설계/감리 5.6억, 주차장조성 20억 원

<화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명 : 1,000년의 화원, 다시 꽃피다!
- 위치 : 화원읍 천내리 850-2번지 일원
- 면적 : 150,669㎡
- 총사업비 : 241.5억원(국비 115, 시비 57.5, 군비 57.5, 기금 11.5)
- 사업기간 : 2020. ~ 2023.(4년간)
-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비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	① 주민 커뮤니티 교류공간 '소통'	2,220
	② 예술놀이 오픈 캠퍼스 '봄꿈'	4,380
	합 계	6,600
공공복지 서비스 활성화	③ 상상 어울림센터 '비상'	9,140
	④ 실버 커뮤니티 공간 '나들이'	3,000
	합 계	12,140
골목상권 활성화	⑤ 화원 새싹점포, 으뜸상품 판매센터	620
	⑥ 걷고 싶은 화원 시장길	850
	합 계	1,470
생활 인프라 개선	⑦ 살기좋은 '화원' 만들기	3,940
	합 계	3,940
총 합 계		24,150

○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 매입

1. 사업개요

- 위치 : 화원읍 설화리 563번지 일원
- 기간 : 2020. ~ 2021.
- 부지면적 : 218,853.2㎡(총 97필지)
- 사업비 : 800억 원(토지매입비)

<대구시 신청사 건립 제안개요>

- 부지면적 : 220,882㎡(총 102필지, 사유지·군유지 포함)
- 시설규모 : 건축면적 6,500㎡, 연면적 130,000㎡
- 주요시설 : 시청(지하4층 지상20층), 의회(지상4층), 광장, 주차장(1,000대)
수변공원, 도시 숲(교양·편익·운동·조경시설, 캠핑장 등)

2. 무상사용 허가

- 사용허가 및 기간 : 수의(5년마다 갱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사용료 : 면제(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무상사용허가 조건 : 영구시설물(대구시 신청사)축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와 해당 지방의회 동의

○ 대구경찰특공대 이전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

- 교환대상

구 분	위 치	부지면적(m ²)	지역·지구	비고
이전 대상지 (화원, 옥포)	화원읍 설화리 838-2, 옥포읍 기세리 산31-1 일원	93,876m ²	개발제한, 자연녹지	달성군 소유
구 화원면허 시험장	화원읍 성산리 412-1	21,835m ²	생산녹지, 광로3류, 완충녹지저축	경찰청 소유 (건물포함)
달성 교통초소	화원읍 명곡리 939-11	202m ²	하천, 근린상업지역	
다사치안센터	다사읍 매곡리 719-19	295m ²	준주거지역	

○ 호텔 아젤리아 별관 증축

- 위 치 : 유가읍 용리 31-2번지(※비슬산관광지 도시관리계획에 따름)
- 기 간 : 2019. 9. ~ 2022. 5.
- 규 모 : 부지면적 13,445m², 건축연면적 5,000m², 지상2층
- 주요시설 : 대강당, 골프연습장, 사우나, 휘트니스, 근린생활시설 등
- 총사업비 : 198.74억 원(군비)
 - 공사비 174.4억, 설계비 9.86억, 감리비 13.98억, 기타 0.5억 원

○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

- 위 치 : 현풍읍 중리 506번지(테크노폴리스 내)
- 기 간 : 2018. 1. ~ 2022. 6.
- 규 모 : 부지면적 10,737㎡, 건축연면적 11,680㎡, 지하1층/지상4층
- 주요시설 : 도서관, 노인문화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등
- 총사업비 : 295억 원(국비 43, 시비 21.5, 군비 230.5)
 - 공사비 265억, 설계비 11.7억, 감리비 17.2억, 기타 1.1억 원
- ※ 부지매입 완료(2014년도 37억 원)

○ 화원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 기 간 : 2020. 1. ~ 6.
- 위 치 : 화원읍 성산리 253번지 등 총 28필지(화원유원지 일원)
- 면 적 : 29,386㎡
- 사 업 비 : 40억 원

<화원관광지 조성 사업>

- 기 간 : 2016. ~ 2023.
- 위 치 : 화원읍 성산리 310번지 일원(화원유원지 일원)
- 면 적 : 214,760㎡(1차사업구간 77,338㎡, 2차사업구간 137,422㎡)
- 사업비 : 799.69억 원
 - 1차사업 : 312.69억 원(국비 206.15, 시비 106.54)
 - 2차사업 : 487억 원(군비)
- 주요시설
 - 1차사업구간 : 역사문화체험전시관, 고분공원, 상화대공원, 팔각정 정비 등
 - 2차사업구간 : 관광호텔, 자연치유원, 예술공원, 어린이 테마공원 등

- 붙임 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1부.
2. 2019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1부. 끝.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m², 천원)

구 분		당 초			금 회			계		
		건수 (필지)	수량	금액	건수 (필지)	수량	금액	건수 (필지)	수량	금액
취득	계				140	299,690.14	131,645,085	140	299,690.14	131,645,085
	1.매입				129	253,853.2	62,746,021	129	253,853.2	62,746,021
	토지									
	건물				2	498.8	19,788	2	498.8	19,788
	2.교환				3	22,332	8,907,463	3	22,332	8,907,463
	토지									
처분	3.기타				3	4,294.39	1,937,813	3	4,294.39	1,937,813
	토지									
	건물				3	18,711.75	58,034,000	3	18,711.75	58,034,000
	계				58	93,876	2,693,450	58	93,876	2,693,450
	4.매각									
	토지									
5.양여	건물									
	토지									
6.교환	계				58	93,876	2,693,450	58	93,876	2,693,450
	토지									

2020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주 소	성 명		
1	답	답	현풍읍	원교리	718-2	1,319	330,000,000	2020. 8.	달성군 재활용품 선별장 확장이전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도의리 289	곽병근	신축	
2	답	장	현풍읍	원교리	720	1,098	461,160,000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771-4	김형인		
3 (건물)	답	장	현풍읍	원교리	720	258.8	15,948,000			무성그린맨션 101-1007	"		"
4	잡	장	현풍읍	원교리	721	2,747	1,153,740,000			"	"		"
5 (건물)	잡	장	현풍읍	원교리	721	240	3,840,000			"	"		"
6	도	도	현풍읍	원교리	1749-33	450	189,000,000			건설부	국유지		
7 (건물)	대	대	화원읍	천내리	850-2 860-2	2031.75	8,660,000,000 (사업비)	2021. 8.	화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장 어울림센터 신축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8	주거장	주거장	회원읍 설화리	563	38,882.3	38,882.3	50,663,636,900	2020. 6.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매입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한국토지 주택공사	
9	주거장	주거장	회원읍 명곡리	324	33.5	33.5	36,347,500			"	"	
10	주거장	주거장	회원읍 명곡리	324-1	45.9	45.9	49,801,500			"	"	
11	구거	구거	회원읍 설화리	569	692.2	692.2	71,642,700			"	"	
12	임	임	회원읍 명곡리	931	18,105	18,105	128,726,550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401-3	화원 교회	
13	임	임	회원읍 명곡리	931-1	7,980	7,980	48,438,600			"	"	
14	임	임	회원읍 명곡리	909-1	19,834	19,834	123,764,160			"	"	
15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8-9	83	83	8,067,600			기획재정부	국유지	
16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1-8	23	23	2,235,600			"	"	
17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1-9	99	99	9,622,800			"	"	
18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1-3	202	202	19,634,400	"	"			
19	잡	잡	회원읍 명곡리	322-1	34.2	34.2	27,264,240	대구시 중구 명덕로 85 (남산동)	대양에너지 주식회사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주	소	
20	임	임	화원읍	명곡리	931-4	21,397	152,132,670	2020. 6.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매입		대구시 수성구 지범로22길 10, 101동 107호(자산동보상매선)	최혁 외 2	
21	임	임	화원읍	명곡리	909-7	3,306	22,679,160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497-2 신신빌라 비동 301호	김영숙 외 4	
22	임	임	화원읍	명곡리	909-6	417	2,710,500			대구시 달성군 옥포읍 간경리693	석권도	
23	임	임	화원읍	명곡리	909-5	8,007	48,602,490			대구시 서구 내당동318 삼익뉴타운 103동 811호	강다원	
24	답	답	화원읍	명곡리	918	1,197	95,760,000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243, 501동1601호(미래빌5단지)	구봉일	
25	답	답	화원읍	명곡리	917	995	55,222,500			"	"	
26	전	전	화원읍	명곡리	901	483	26,806,500			대구시 서구 월대동3가 1446-1	김병명	
27	전	전	화원읍	명곡리	909-8	2,086	115,773,000			"	"	
28	답	답	화원읍	명곡리	908	879	48,784,500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866	김용득	
29	답	답	화원읍	명곡리	906-1	1,395	77,422,500			"	"	
30	전	전	화원읍	명곡리	905	330	45,738,000			"	"	
31	답	답	화원읍	명곡리	906-2	1,069	148,163,400			"	"	
32	묘	묘	화원읍	명곡리	904	884	33,768,800			"	"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33	답	화원읍	명곡리	907-1	1,537	1,537	85,303,500	2020. 6.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매입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702-2	김정용	
34	답	화원읍	명곡리	907-2	1,154	1,154	64,047,000			"	"	
35	답	화원읍	설화리	578-6	502	502	48,794,400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1-2 창구정합면선 101동102호	김진식	
36	답	화원읍	설화리	575	324	324	31,492,800			"	"	
37	답	화원읍	설화리	578-12	281	281	27,313,200			"	"	
38	답	전	화원읍	설화리	433	433	44,599,000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750-2	박성곤	
39	답	전	화원읍	설화리	23	23	2,369,000			"	"	
40	전	전	화원읍	명곡리	423	423	23,476,500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564-1	박정수	
41	전	전	화원읍	명곡리	1,388	1,388	77,034,000			"	"	
42	대	대	화원읍	명곡리	433	433	115,178,000			"	"	
43	답	전	화원읍	명곡리	952	952	52,836,000			"	"	
44	목장 용지	목장 용지	화원읍	명곡리	810	810	104,733,000			"	"	
45	답	전	화원읍	명곡리	1,334	1,334	118,459,200			"	"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주 소	성 명	
46	답	전	회원읍	명곡리	915	1,297	115,173,600	2020. 6.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매입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564-1	박정수	
47	전	전	회원읍	명곡리	900	374	54,978,000			경북 영주시 중앙로 95번길13(영주동)	윤성훈	
48	전	전	회원읍	명곡리	899	1,104	162,288,000			"	"	
49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9-2	1,425	162,022,5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설화리 753	임재암	
50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9-5	1,150	111,780,000			"	"	
51	답	답	회원읍	명곡리	925	840	46,620,000			대구시 남구 대명복개로3길71 (대명동)	최명섭	
52	답	답	회원읍	명곡리	923	664	53,120,000			"	"	
53	답	전	회원읍	명곡리	926-1	1,323	73,426,5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명천로 57, 10동1303호(대명역-관비)	최영옥	
54	답	전	회원읍	명곡리	926-3	631	35,020,500			"	"	
55	전	전	회원읍	설화리	579-1	436	42,379,200			대구시 달서구 도원로 45, 411동802호(도원동,대명강변역)	황정숙	
56	전	전	회원읍	설화리	579-3	1,021	116,087,700			"	"	
57	답	답	회원읍	명곡리	920	575	46,000,0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명곡로16길 43	김인진	
58	답	답	회원읍	명곡리	922	1,296	103,680,0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명곡로16길 43	김인진 외 4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59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8-4	632	61,430,400	2020. 6.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매입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설화리 971	정유순 외 2	
60	전	전	회원읍	명곡리	909-2	3,306	47,606,4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천내리 128-3	박만호 외 1	
61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8-1	731	71,053,2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설 화리 714	박춘향	
62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2-1	1,564	152,020,8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명곡 리 139,미래리10동1402호	김진태	
63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8-7	2,522	261,027,000			대구시 남구 대명로20길 82(대명동)	김석곤	
64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8-2	1,051	102,157,2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모 개골길14	임상호	
65	답	전	회원읍	설화리	579-4	1,293	147,014,1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설 화리 708	박제덕	
66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8-8	949	92,242,800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동 로 162	김준영	
67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8-3	1,600	155,520,000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2010-19	김충겸	
68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8-10	1,322	128,498,4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설 화리 966	석정호	
69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3	774	75,232,8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명 곡리 193	김정수	
70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4	783	76,107,600			대구시 동구 신천동 360 코오롱아파트 4동 203호	임진택	
71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6	1,501	145,897,2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비슬로 504 길13-17, 1015031회영마을자연	정쌍복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72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1-10	258	25,077,600	2020. 6.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매입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비 슬로500길 12-8	김미승	
73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8-11	899	87,382,800			대구시 달서구 장기로 189, 108동1003호(본리동,상대매입)	주춘숙	
74	답	전	회원읍	설화리	571-12	909	88,354,800			대구시 달서구 진천로3길 85-18(진천동)	박영명	
75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7	820	79,704,000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545-3	임영수	
76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1-13	208	20,217,6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설 화리 683	임판수	
77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0-1	46	4,471,2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명 곡리 216	박동방 우	
78	전	전	회원읍	명곡리	902	727	40,348,500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길 7, 509동109호(영광현대)	김창현	
79	답	답	회원읍	명곡리	921	1,537	85,303,5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비 슬로 2493	신유창	
80	답	전	회원읍	명곡리	926-2	1,706	94,683,0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명 천로 304	진공희	
81	전	전	회원읍	명곡리	924	688	55,040,0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명곡 리 139, 미래빌 408동904호	김태성	
82	전	과수원	회원읍	명곡리	910	2,079	115,384,5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명곡 리220,미래빌 506동1405호	유혜양	
83	대	대	회원읍	명곡리	903	879	269,589,3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명 곡리 886	임소암	
84	대	대	회원읍	명곡리	909-3	932	291,716,000			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283 14동1302호(미산동, 뉴타운매입)	김순임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주	소	성 명	
85	대	대	회원읍	명곡리	909-4	482	150,866,000	2020. 6.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매입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909-4			바산화
86	전	전	회원읍	명곡리	899-2	1,204	176,988,000			대구시 달서구 진천로8길 7-14(진천동)			진효숙
87	답	답	회원읍	명곡리	919	635	50,800,000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478			전이씨 다산공화 중증
88	유지	유지	회원읍	명곡리	927	1,884	104,562,000			기획재정부			국유지
89	유지	유지	회원읍	명곡리	928	1,364	75,702,000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90	유지	유지	회원읍	명곡리	928-1	61	3,385,500			"			"
91	유지	유지	회원읍	명곡리	929	1,481	82,195,500			"			"
92	유지	유지	회원읍	명곡리	930	11,696	649,128,000			"			"
93	구거	구거	회원읍	설화리	1143	802	83,007,000			"			"
94	구거	구거	회원읍	설화리	572-3	94	9,729,000			"			"
95	구거	구거	회원읍	설화리	571-18	26	2,691,000			"			"
96	구거	구거	회원읍	설화리	571-19	26	2,691,000			"			"
97	구거	구거	회원읍	설화리	571-20	36	3,726,000			"			"
98	구거	구거	회원읍	설화리	571-21	7	724,500			"			"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99	구거	구거	회원읍	명곡리	973	1,330	73,815,000	2020. 6.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매입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100	구거	구거	회원읍	설화리	1143-1	1,081	111,883,500			"	"	
101	구거	구거	회원읍	설화리	571-7	404	41,814,000			기획재정부	"	
102	천	천	회원읍	명곡리	939-1	16,210.1	972,606,000			국토교통부	"	
103	구거	구거	회원읍	설화리	572-2	13	1,345,500			한국농어촌공사	"	
104	구거	구거	회원읍	설화리	570-2	112	11,592,000			"	"	
105	대	대	회원읍	성산리	412-1	21,835	8,380,273,000	2020. 3.	대구 경찰특공대 이전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	경찰청	"	구 회원 면허 시험장
106 (건물)	대	대	회원읍	성산리	412-1	3,926	1,506,787,286			"	"	
107	대	대	다사읍	매곡리	719-19	295	515,070,000			"	"	달성 다사 치안 센터
108 (건물)	대	대	다사읍	매곡리	719-19	242.54	423,474,840			"	"	
109	천	천	회원읍	명곡리	939-11	202	12,120,000			"	"	달성 교통 초소
110 (건물)	천	천	회원읍	명곡리	939-11	125.85	7,551,000			"	"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제 지	용 리	31-2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11 (건물)	갑	대	유가읍	용리	31-2	13,445	19,874,000,000 (사업비)	5,000	2022. 5.	호텔 아펠리아 별관 증축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증축	
112 (건물)	대	대	현풍읍	중리	506	10,737	29,500,000,000 (사업비)	11,680	2022. 6.	달성군 교육문화 복지센터 건립	"	"	신축	
113	임	임	화원읍	성산리	253	172	10,904,800	172	2020. 6.	화원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달성군 화원읍 구리3길 8-8	전성배		
114	대	대	화원읍	성산리	257	258	58,462,800	258			"	전성배		
115	임	임	화원읍	성산리	241	76	1,216,000	76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245	전병득		
116	묘	묘	화원읍	성산리	258	979	67,551,000	979			달성군 화원읍 구리3길 8-8	전성배		
117	임	임	화원읍	성산리	242	155	2,619,500	155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245	전병득		
118	임	임	화원읍	성산리	259	258	4,850,400	258			달성군 화원읍 구리3길 8-8	전성배		
119	묘	묘	화원읍	성산리	264	245	16,905,000	245			"	전성배		
120	임	임	화원읍	성산리	260	198	3,801,600	198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245	전병득		
121	묘	묘	화원읍	성산리	265	598	41,262,000	598			달성군 화원읍 구리3길 8-8	전성배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22	임	임	화원읍	성산리	261	169	3,075,800	2020. 6. 화원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245	전병득	
123	임	임	화원읍	성산리	263	1,045	19,019,000				달성군 화원읍 구라3길 8-8	전성배	
124	임	임	화원읍	성산리	산46	1,983	38,073,600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245	전병득	
125	임	임	화원읍	성산리	262	684	12,448,800				"	전병득	
126	대	대	화원읍	성산리	272	1,421	388,927,700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271	배진호	
											달성군 하빈면 묘리 692	박노균	
											대구 북구 산격동 981	서희규	
											대구 달서구 상인동 1185	우하충	
											대구 북구 서변동 694	구성서	
											대구 북구 서변동 1101	이해춘	
											대구 북구 동변동 263	구경희	
											대구 수성구 봉무동 180	최진환	
											대구 수성구 만촌동 139	전병곤	
											대구 수성구 만촌동 204	하동규	
											다시읍 문산리 269	윤안	
											가창면 대일리 387	서병찬	
											가창면 우록리 549	김상익	
											가창면 상원리 278	김두한	
											다시읍 세천리 959	구경희	
											대구 달서구 이곡동 419	허노학	
											대구 북구 공산동 1007	유효봉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상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회원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2020. 6.	대구 남구 남산동 362 대구 중구 대신동 512 대구 달서구 상인동 1140 대구 남구 남산동 407 대구 북구 서변동 885 대구 북구 서변동 857 다시읍 세천리 105 다시읍 영양리 624	윤창한 신춘길 우하갑 서대교 이봉래 이민희 구인회 정영원		
127	임	임	화원읍	성산리	산47	5,157	94,373,100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290	전의이 씨공구 당공파 중증		
128	전	전	화원읍	성산리	279	701	18,226,000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290	전의이 씨공구 당공파 중증		
129	임	임	화원읍	성산리	산50-4	198	3,564,000			중구 산격동 1040	김용민		
130	임	임	화원읍	성산리	산50-3	99	1,782,000			중구 산격동 1040	김용민		
131	전	전	화원읍	구라리	834	506	35,420,000			달성군 화원읍 구라1길 77-24	백경자		
132	임	임	화원읍	구라리	산99-2	198	4,197,600			대구 동구 신암동 200-1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박종석 박영호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회원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581-28 송원맨션 3동 1205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28 송원맨션 1동 90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212,704동 1306호(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김용희 박재용	
133	전	전	화원읍	구라리	835	1,210	53,040,000			달성군 화원읍 구라1길 77-24	백경자	
134	전	전	화원읍	구라리	830	1,021	71,470,000	2020. 6.		대구 달서구 송현동 1991 동서장관연립주택 108-109	임영목	
135	전	전	화원읍	구라리	829-1	403	22,285,900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36-8	서숙이	
136	임	임	화원읍	구라리	산99-1	7,772	170,764,000			대구 동구 신암동 200-1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581-28 송원맨션 3동 1205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28 송원맨션 1동 90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212,704동 1306호(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박중석 박영호 김용희 박재용	

연번	지 목		재 산 의 포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37	임	임	화원읍	구라리	산98-2	992	24,601,600	2020. 6.	회원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회원읍 천내리 117 보성아파트 106동 303호	서풍교	
138	전	전	화원읍	구라리	829	85	4,700,500			달성군 회원읍 천내리 36-8	서숙이	
139	임	임	화원읍	구라리	산98-1	198	4,910,400			달성군 회원읍 회원로2길 26	이무현	
140	임	임	화원읍	구라리	산96	3,373	70,158,400			대구 중구 서야동 29 대구 중구 서야동 29 대구 중구 서야동 29	백남길 백남옥 백남혁	

2020년도 공유재산 처분대상 재산목록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처분 시기	처분 사유	처분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시설	소	재	지					주 소	성 명	
1	임	임	옥포읍	기세터	산30-13	4,186	7,241,780	2020. 3. 대구 경찰특공대 이전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교환	
2	임	임	옥포읍	기세터	산30-14	598	1,076,400					
3	임	임	옥포읍	기세터	산31-1	8,628	15,357,840					
4	임	임	옥포읍	기세터	산31-2	496	882,880					
5	임	임	옥포읍	기세터	산31-3	793	1,467,050					
6	전	전	옥포읍	기세터	1-1	529	54,063,800					
7	전	전	옥포읍	기세터	1-3	954	86,337,000					
8	답	답	옥포읍	기세터	2-1	1,183	120,902,600					
9	전	전	옥포읍	기세터	3	1,831	165,705,500					
10	전	전	옥포읍	기세터	4-1	1,402	177,633,400					
11	전	전	옥포읍	기세터	5	1,302	117,831,000					
12	전	전	옥포읍	기세터	6	608	55,024,000					
13	전	전	옥포읍	기세터	7	1,220	110,410,000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처분 시기	처분 사유	처분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4	전	전	우포읍	기세리	8	889	80,454,500	2020. 3. 대구 경찰특공대 이전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	대구 경찰특공대 이전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교환
15	전	전	우포읍	기세리	9-1	569	75,904,600			"	"	
16	전	전	우포읍	기세리	11-1	506	67,500,400			"	"	
17	전	전	우포읍	기세리	12	565	51,132,500			"	"	
18	전	전	우포읍	기세리	13	1,177	93,218,400			"	"	
19	전	전	우포읍	기세리	14	621	49,183,200			"	"	
20	전	전	우포읍	기세리	15	377	29,858,400			"	"	
21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24-1	3,471	20,583,030			"	"	
22	임	임	화원읍	설화리	124-7	496	3,035,520			"	"	
23	임	임	화원읍	설화리	124-9	298	777,780			"	"	
24	임	임	화원읍	설화리	124-10	1,289	3,364,290			"	"	
25	임	임	화원읍	설화리	124-15	384	810,240			"	"	
26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24-17	20,383	41,173,660			"	"	
27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24-18	61	128,710			"	"	
28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43	6,347	79,337,5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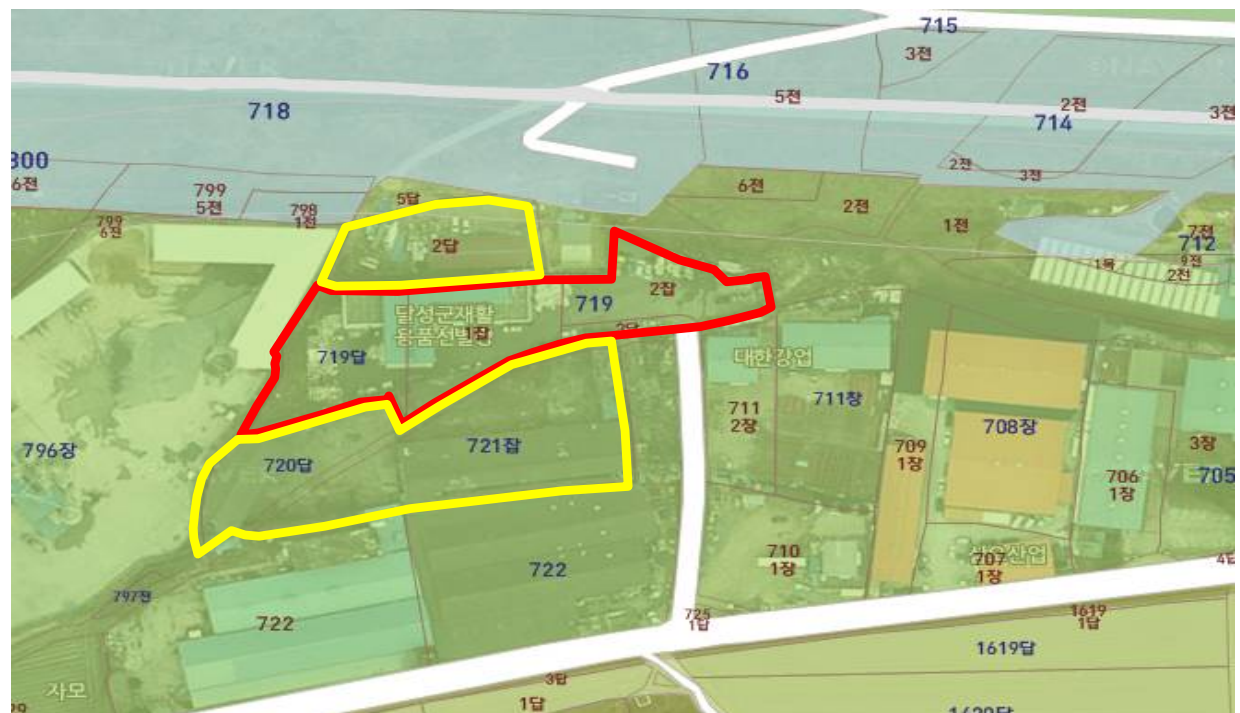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처분 시기	처분 사유	처분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29	임	임	회원읍	설화리	산144	2,380	11,781,000	2020. 3. 대구 경찰특공대 이전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교환	
30	임	임	회원읍	설화리	산145-1	8,132	16,670,600					
31	임	임	회원읍	설화리	산145-3	397	837,670					
32	임	임	회원읍	설화리	산145-4	793	1,704,950					
33	임	임	회원읍	설화리	산145-5	3,224	6,931,600					
34	임	임	회원읍	설화리	산146	595	3,712,800					
35	임	임	회원읍	설화리	산147	1,983	4,263,450					
36	임	임	회원읍	설화리	산148-1	1,686	10,318,320					
37	임	임	회원읍	설화리	산148-2	1,983	25,382,400					
38	임	임	회원읍	설화리	산148-2	298	3,814,400					
39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38-4	161	28,336,000					
40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39	1,655	202,737,500					
41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40-1	255	21,471,000					
42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40-2	836	55,176,000					
43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40-3	476	40,079,200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처분 시기	처분 사유	처분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44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40-5	922	78,370,000	대구 경찰특공대 이전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 2020. 3.	대구 경찰특공대 이전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교환
45	주차장	주차장	회원읍	설화리	840-8	240	64,896,000			"	"	
46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42	1,091	12,328,300			"	"	
47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43	774	8,746,200			"	"	
48	임	임	회원읍	설화리	844	760	8,588,000			"	"	
49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44-1	2,106	46,121,400			"	"	
50	대	대	회원읍	설화리	838-2	593	289,146,800			"	"	
51	대	대	회원읍	설화리	840	329	127,684,900			"	"	
52	대	대	회원읍	설화리	840-6	96	25,958,400			"	"	
53	구	구	옥포읍	기세리	1-4	11	995,500			"	"	
54	구	구	옥포읍	기세리	1-5	41	3,710,500			"	"	
55	구	구	옥포읍	기세리	4-2	113	10,226,500			"	"	
56	구	구	옥포읍	기세리	9-2	551	49,865,500			"	"	
57	구	구	회원읍	설화리	840-9	95	9,500,000			"	"	
58	구	구	회원읍	설화리	841-5	137	13,700,000			"	"	

위 치 도

【달성군 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에 따른 부지매입】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원교리 718-2번지



현 장 사 진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원교리 718-2번지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원교리 720번지



현 장 사 진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원교리 721번지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원교리 1749-33번지



사업계획구상도



【회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상 어울림센터 신축】

현 장 사 진

【화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상 어울림센터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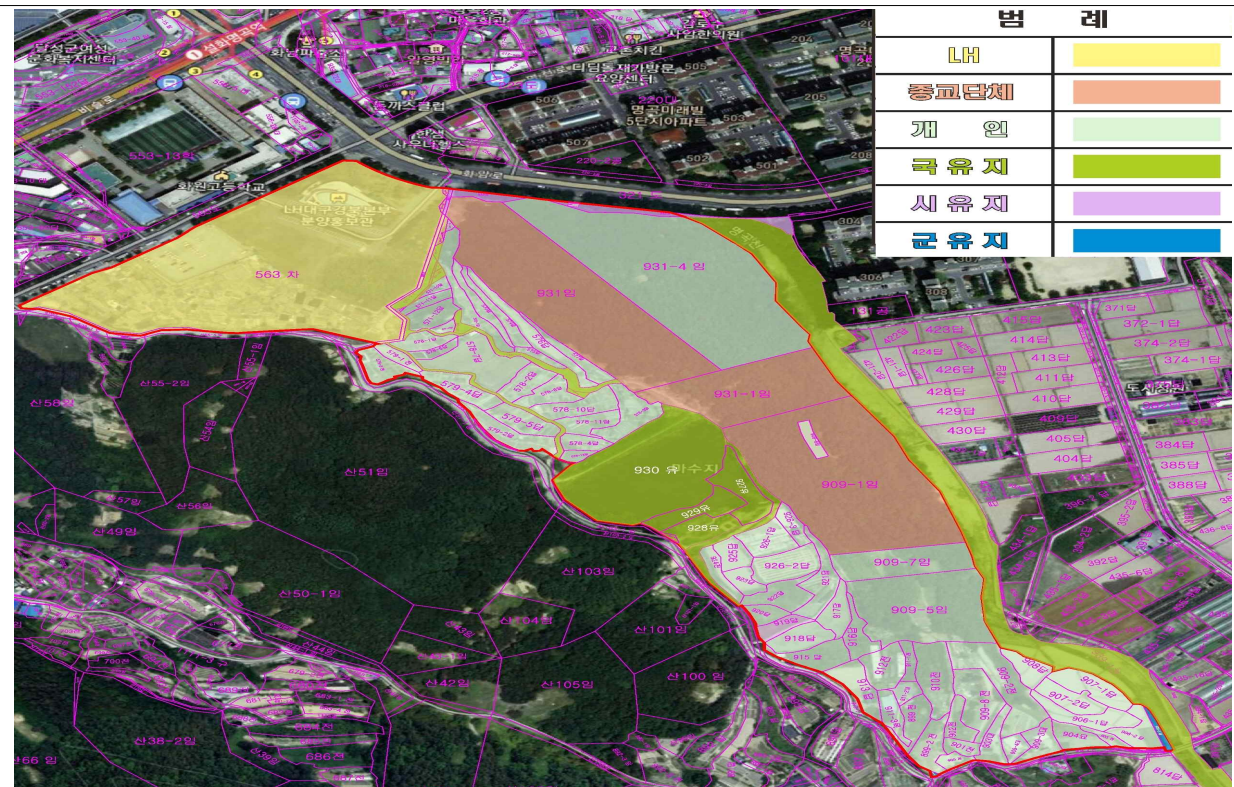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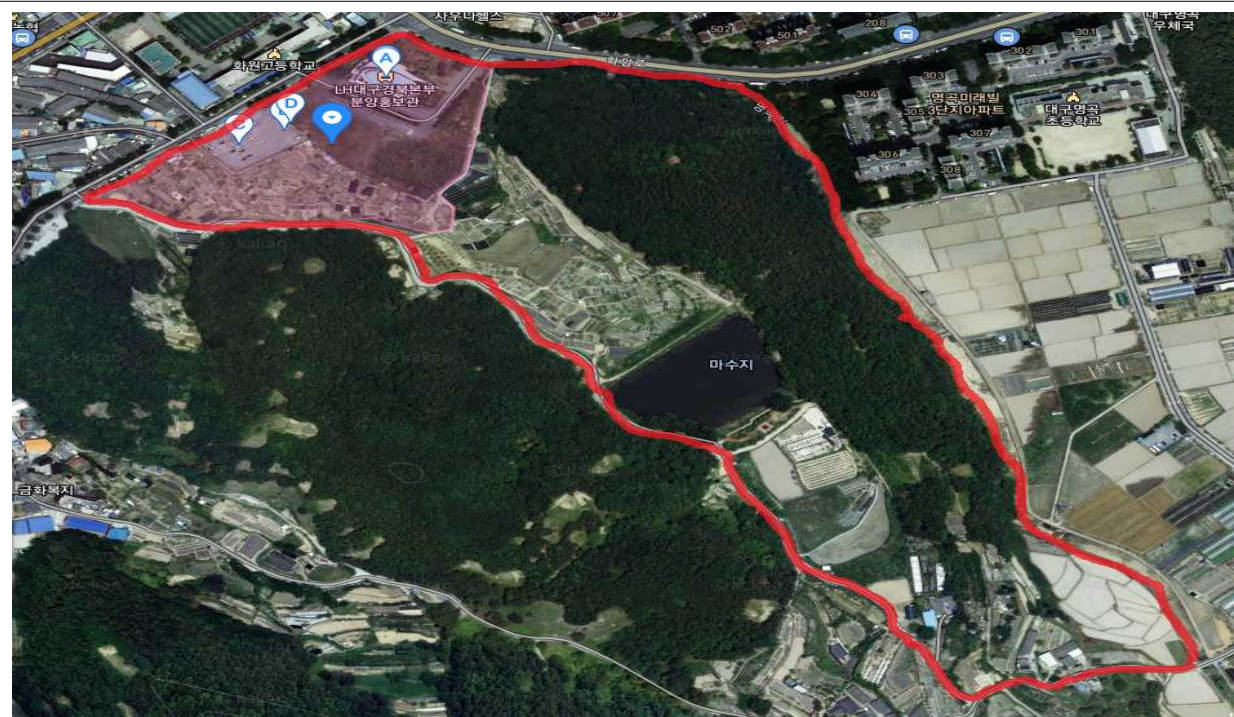
□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850-2, 860-2번지



위 치 도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 매입】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563번지 일원



현장사진 및 배치도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563번지 일원



위치도 및 조감도(처분재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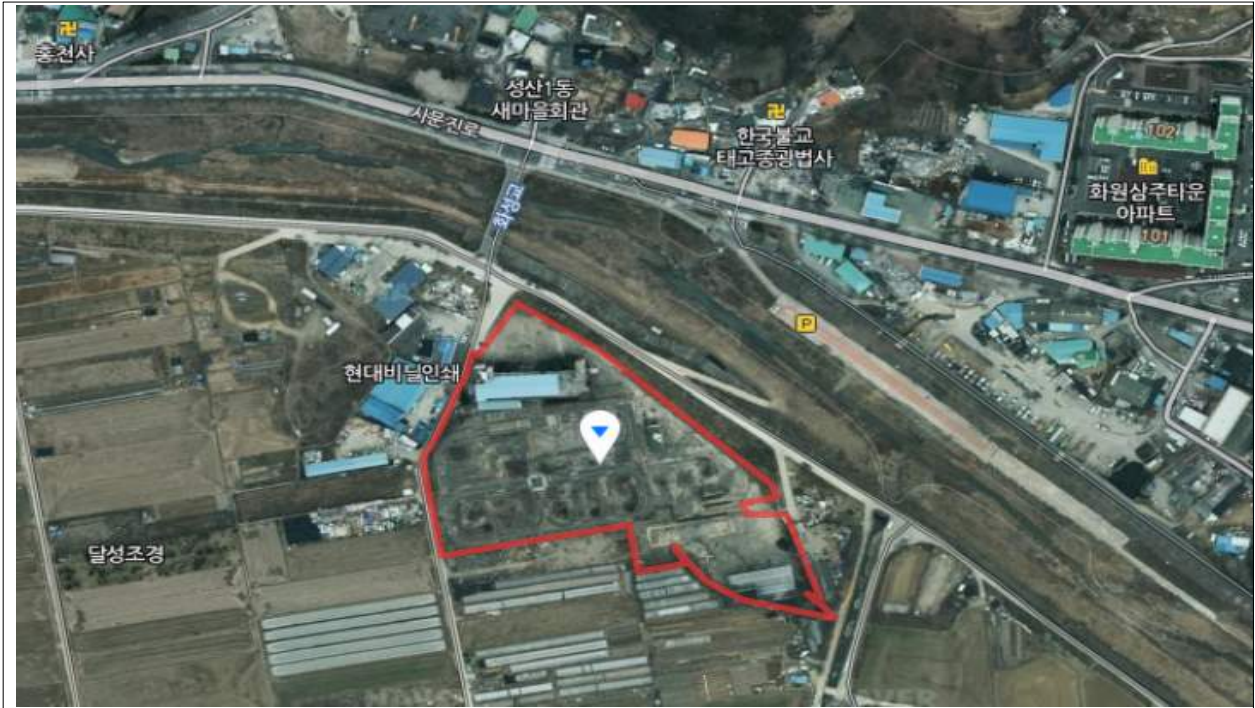
【대구경찰특공대 이전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

□ 위치 : 화원읍 설화리 838-2번지, 옥포읍 기세리 산31-1번지 일원



위 치 도(취득재산)

□ 위치 : 화원읍 성산리 412-1번지



□ 위치 : 다사읍 매곡리 719-19번지



위 치 도(취득재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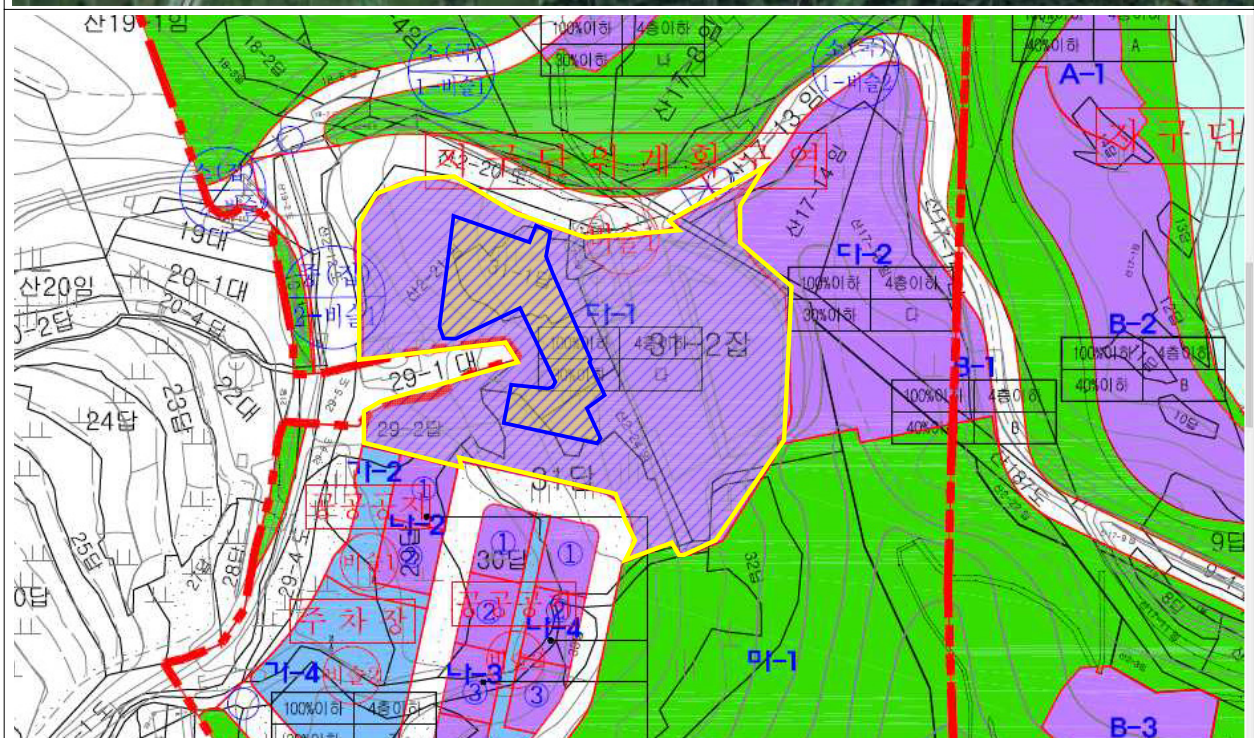
□ 위치 : 화원읍 명곡리 939-11번지



위 치 도

【호텔 아젤리아 별관 증축】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용리 31-2번지



현 장 사 진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용리 31-2번지



배 치 도(안)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용리 31-2번지



위 치 도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중리 506번지



조 감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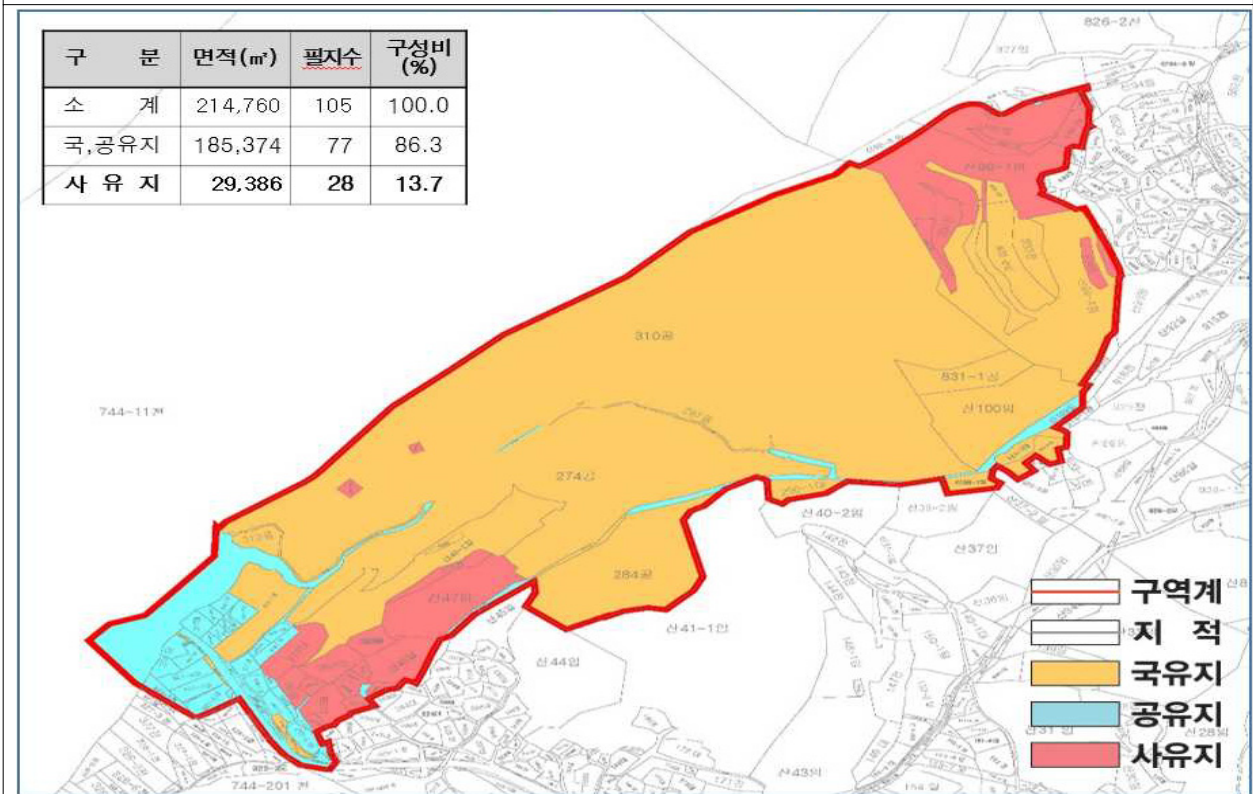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중리 506번지



【화원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illegible]

구 분	면적(㎡)	<u>필지수</u>	구성비 (%)
소 계	214,760	105	100.0
국,공유지	185,374	77	86.3
사 유 지	29,386	28	13.7



현 장 사 진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310번지 일원



II. 검토의견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달성군 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에 따른 부지매입

재활용품 선별장이 노후화되고 재활용품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남에 따라 선별작업의 불편 및 적재공간의 협소를 개선하고 재활용품 선별장 현대화를 위한 사업이므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화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상 어울림센터 신축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19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화원읍 천내리 일원이 선정된 사업내용 중 공공복지 서비스 활성화 사업의 일환 상상 어울림센터를 신축하여 지역 육아복지 및 청년 창업의 거점시설로 운영코자 하는 것이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 매입

-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LH분양홍보관 일원 부지를 매입, ‘대구광역시 신청사 및 부속시설’의 용도로 대구시에 무상사용 허가하여, 새로운 대구 백년대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 대구시 신청사를 달성 화원에 유치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경쟁력 강화, 주민복지 증진은 물론, 달성군을 중심으로 대구시 전체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대구경찰특공대 이전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

우리 군 소유 부지와 대구지방경찰청 소유의 구 화원면허시험장, 달성 교통초소, 달성 다사치안센터 부지를 교환하여, 우리 군 관내로 국가 기반시설인 경찰특공대를 이전·유치하고, 교환 후 지역발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호텔 아젤리아 별관 증축

비슬산관광지 내 호텔 아젤리아의 별관을 증축하여 사용자의 편의 증진 및 호텔의 기능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

급증하는 달성 남부권(유가·현풍·구지) 주민들의 교육·문화·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므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화원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화원유원지 및 사문진역사공원 일원을 매력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달성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5.29)

3.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인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전 까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여야 하며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익(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익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 4.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10. 생략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이하 "공용재산"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이하 "공공용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4. 7. 7., 2016. 7. 12.>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23. 생략

□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 제17조

① 군수는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용역비, 홍보비 등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사 건립 달성군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건립 부지를 매입하여 대구광역시에 무상 제공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유치위원회 및 그 위원이 유치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11월 11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2020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 8,250천 원
 - 지역진흥을 위한 연구·컨설팅, 지역축제·관광 홍보, 특산품 마케팅 지원, 마을경제 및 공동체 지원사업 등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으로 설립
 - 2019년 제2차 이사회“2020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 요청”의결(2019. 8. 22.)
 - 출연금 산출 기초(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

구 분	산출금액
《배정기준》	
○ 기초자치단체	
- 인구 30만명 이상 시·군 : 13,750천 원	
- 인구 30만명 이상 자치구 : 11,000천 원	
- 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시·군·구 : 8,250천 원	
-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 5,500천 원	8,250천 원

- 붙임 1. 출연심의 요구서.
2.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3. 출연기관 현황.

출연심의 요구서

기 관 명	한국지역진흥재단																							
출 연 대 상	○ 이사장 : 김기수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10-6 상영빌딩 4층																							
출 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8,250천 원(전액 군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천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사업 기간</th><th rowspan="2">2019년 예산액</th><th rowspan="2">2020년 요구액</th><th colspan="5">재 원 별</th></tr> <tr> <th>계</th><th>국비</th><th>시비</th><th>군비</th><th>기타</th></tr> </thead> <tbody> <tr> <td>한국지역진흥 재단 출연금</td><td>2020년</td><td>8,250</td><td>8,250</td><td>8,250</td><td></td><td></td><td>8,250</td><td></td></tr> </tbody> </table>	구 분	사업 기간	2019년 예산액	2020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한국지역진흥 재단 출연금	2020년	8,250	8,250	8,250			8,250	
구 분	사업 기간					2019년 예산액	2020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한국지역진흥 재단 출연금	2020년	8,250	8,250	8,250			8,250																	
출 연 필 요 성	○ 중앙과 지방 간 상생협력체제 구축 ○ 한국지역진흥재단 보유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예산절감 효과 도모 ○ 지역특산물 판로 확대 추진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																							
사업부서 검토의견	○ 불 임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 2019년 추진실적(전체 지자체)

① 국가·지자체 주요시책의 통합적 홍보

- 재단 전용 홍보공간을 활용한 홍보활동 강화
 - 정부서울청사 전광판 458건, 내고향 갤러리 등 기획전 8회, 지역홍보물 배부 6.5만부
- 지역홍보 인프라 확대 및 온라인 홍보채널 다양화
 - 전광판 추가(IBK 3곳), 유튜브 채널 개설(2. 15.), 블로그 등 모바일 홍보(253건)
- 자치단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상호홍보 추진
 - 전국 88개 지자체, 389개소 전광판 활용 교차 홍보(88건)

② 특산물 홍보·마케팅 강화

- 지역특산물 온·오프라인 병행 판매 확대
 - 직거래장터·상설판매장 판매(12억), 지역명품숍 신규입점(26개 업체 142개 상품)
- ‘마을기업’상품 판로개척 지원
 - 마을기업 직거래 참여(21개 업체), 명품숍 입점(12개 상품), 우수상품 전시(34개 상품)
- 상설 특산품 홍보 전시관 운영(160개 지자체 참여, 926개 상품)

③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

-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포럼 3회) 및 공동체 지원조직 DB 구축
- 공동체 핵심 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운영(5개 과정, 115명)
- 지역진흥 전문 컨설팅,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수행
 - 여주 공동체활성화 모델, 철원 군부대 이전에 따른 유흥지 활용 등 10건

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의견

-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진흥을 위한 연구·컨설팅, 지역축제·관광 홍보, 특산물 마케팅 지원, 마을경제 및 공동체 지원사업 등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출연으로 설립한 재단으로,
- 재단의 운영과 지자체의 지원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단의 정관에 따라 각 지자체 별로 인구수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출연
- 이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과 관련된 우리 군의 마을기업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컨설팅 및 교육, 지역특산물 전시·홍보 판매 및 판로확대 등을 위해 우리 군이 배정받은 8,250천 원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출연기관 현황

기 관 명	한 국 지 역 진 흥 재 단				전 화 번 호	02-3496-2100		
					홈 페이지	http://www.kolop.or.kr/		
설 립 근 거	- 「민법」제32조(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주 요 연 혁	■ 2007. 8. 16.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 허가 ■ 2007. 8. 23. 한국지역진흥재단 개소 (지역홍보센터 오픈) ■ 2011. 7. 14. '지역정보포털'(oneclick.or.kr) 구축·운영 ■ 2012. 7. 16. '지역명품숍'(localbest.co.kr) 쇼핑몰 공식 오픈 ■ 2015. 6. 11. 마을공동체발전센터 신설							
이 사	구분				직위		비고	
	계				이사25명, 감사1명			
	이사	한국지역진흥재단			이사장			
	이사	한국지역진흥재단			상임이사			
	이사	서울특별시			정책기획관		당연직(18명)	
	이사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장			
	이사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이사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이사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이사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이사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이사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			
	이사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이사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이사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이사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이사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			
	이사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이사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이사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			
	이사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이사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장			
	이사	인천광역시 옹진군			부군수		위촉직(6명)	
	이사	울산광역시 중구			부구청장			
	이사	강원도 강릉시			부시장			
	이사	전라남도 고흥군			부군수			
	이사	경상남도 진주시			부시장			
	이사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감사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		당연직	
주 요 기 능	○ 중앙과 지방 간 상생협력 체제 구축 ○ 한국지역진흥재단 보유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예산절감 효과 도모 ○ 지역특산품 판로 확대 추진							
최근3년간 예산현황 (백 만 원)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재 무 현 황 (2019. 12. 31. 기준)	자 산	1,186	
	예 산 액	4,314	3,007	2,504		부 채	326	
	출 연 금	129	490	689		자 본	860	

II. 검토의견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설립근거는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4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 출자 또는 출연과 재정지원의 근거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제2조(재정지원)에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설립과 운영현황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진흥을 위한 연구·컨설팅, 지역축제·관광 홍보, 특산품 마케팅, 마을경제 및 공동체 지원사업 등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출연으로 설립한 재단으로 재단 정관에 각 지자체별로 자체 기준에 따르는 출연금의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로는

중앙과 지방간 상생협력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의 보유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도모하며 지역특산품 판로 확대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계획대로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재정지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11월 11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2020년도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25,099천 원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 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 붙 임
1. 출연심의 요구서
 2. 사업부서 검토의견
 3. 출연기관 현황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대상	○ 일반현황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주요사업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출자·출연 사 업 비	○ <u>출연 예정금액 : 25,099천원(군비)</u>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천원)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2019년도</th><th colspan="3">2020년도 예산안</th><th rowspan="2">전년대비 증 감 액</th></tr><tr><th>연구원 요구액</th><th>부서 산정액</th><th>증 감</th></tr><tr><td>출연금 (군비 100%)</td><td>23,258</td><td>25,099</td><td>25,099</td><td>-</td><td>1,841</td></tr></table>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안			전년대비 증 감 액	연구원 요구액	부서 산정액	증 감	출연금 (군비 100%)	23,258	25,099	25,099	-	1,841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안			전년대비 증 감 액																
		연구원 요구액	부서 산정액	증 감																	
출연금 (군비 100%)	23,258	25,099	25,099	-	1,841																
출자·출연 필 요 성	○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사업부서 검토의견 (중 평)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구제업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없음.																				

사업부서 검토의견

① 부서 검토의견

< 이사회 결산감사 >

- 결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사업 및 예산집행이 승인된 사업계획 및 편성예산에 따라 이루어졌고, 지방세재정포럼을 창설하는 등 재정분권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는 지자체 협력사업이 추진되었음. 특히 지방세 쟁송사무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청사매입 차입금의 조속한 상환과 자체수익 확대를 위한 수탁용역 확대가 필요함

< 운영실적 평가 >

- 조직을 개편하여 지방세교육과 연구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각 사업을 계획에 맞추어 재정비하고자 하였음. 연구과제의 수요조사와 선정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였으나, 연구수행 결과가 법률 제개정 등 실질적으로 정책에 기여하도록 해야함. 지방세교육관의 설립 등 지자체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단년도 사업이 아닌 중장기계획과 연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채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사회적 포용을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과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등에도 노력이 필요함

②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 출연금 예산편성이 필요함.
-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방세 쟁송 사건에 대한 대응논리 및 자문 등의 사업 수행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이 필요함.

③ 출연금 검토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결산 지방세	2018년 결산 보통세 (C)	2020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출연금	167,330,215	167,324,855	25,099	25,099	0	1,841

출연기관 현황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151조」 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전화번호 : 02-2071-2726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2011. 2 설립등기, 2011. 4 개원		기관형태		출연	
인원현황 (2019년 8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임시직·파견	
	77명		66명 (본부장2, 연구위원21, 사무직28)		11명 (위촉연구원2, 파견공무원9)	
임원 (2019년 8월 현원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허성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17.12.22. ~ 2020.12.21.	
	부이사장	황명선	충청남도 논산시장		2019. 2.28. ~ 2020. 2.27.	
	이사	(공석)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연직	
	이사	이용철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		당연직	
	이사	김하균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19. 2.28. ~ 2020. 2.27.	
	이사	이용석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		2019. 2.28. ~ 2020. 2.27.	
	이사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2019. 2.28. ~ 2020. 2.27.	
	이사	김장호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2019. 2.28. ~ 2020. 2.27.	
	이사	박상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구청장		2019. 2.28. ~ 2020. 2.27.	
	이사	김항섭	충청북도 청주시 부시장		2019. 2.28. ~ 2020. 2.27.	
	이사	윤여일	전라북도 무주군 부군수		2019. 2.28. ~ 2020. 2.27.	
	이사	금재덕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19. 2.28. ~ 2021. 2.27.	
	감사	김영빈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연직	
	감사	노홍래	전라북도 순창군 부군수		2018. 2. 28. ~ 2020. 2. 27.	
주요기능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 : 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 : 백만원)	57,912 (설립이후 2018년까지 지자체가 출연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재무현황 (백만원) ‘18.12.31기준	18,188 (자산 총액)
	예산액	9,986	13,313	12,759		부채 4,456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9,551	12,102	10,843		자본 13,731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 : 백만원) ‘18. 12. 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1,166				8,603	2,563

II. 검토의견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 (이하“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세발전기금 설치·운용의 의무화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 지방세발전기금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1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지방세발전기금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와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공동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원이 수행하는 지방세 제도연구 및 교육 등이 향후 지자체의 세수증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하므로, 출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상위 및 관계 법령(발췌)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020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11월 11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2020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달성복지재단 운영비 출연 : 814백만 원
 -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달성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한 출연금 교부
 - 모금 및 배분사업,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군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 노인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36개 수탁시설 복지 종사자의 자질 향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

- 붙 임
1. 출연심의 요구서
 2. 사업부서 검토의견
 3. 출연기관 현황

출연 심의요구서

출 연 대 상	○ 기관명 :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 대 표 : 차준용(비영리 공익법인, 2008. 10. 15 설립) ○ 일반현황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512길 66 (화원상설시장 건물 2층) - 기본재산 : 20억 원(달성군 출연금) - 주요사업 ·시설운영 : 노인복지관, 장난감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36개 수탁시설 ·모금사업 : 기부문화 및 기업사회공헌 활성화, 착한가게, 나눔 캠페인 ·배분사업 : 지정·결연 후원, 저소득 가정 지원, 후원물품 등 ·기획사업 : 홀로어르신 명절나기, 희망찾기 가족사랑 여행 지원 등																																																		
출 연 사업비	○ 출연 예정금액 814백만 원 - 운영비 : 814백만 원(군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사업 기간</th><th rowspan="2">2019년 예산액</th><th rowspan="2">2020년 요구액</th><th colspan="5">재 원 별</th></tr><tr><th>계</th><th>국비</th><th>시비</th><th>군비</th><th>기타</th></tr><tr><td>인건비</td><td>2020.01.01~12.31</td><td>313</td><td>360</td><td>360</td><td></td><td></td><td>360</td><td></td></tr><tr><td>기본경비</td><td>2020.01.01~12.31</td><td>214</td><td>243</td><td>243</td><td></td><td></td><td>243</td><td></td></tr><tr><td>시설지원사업 등</td><td>2020.01.01~12.31</td><td>176</td><td>111</td><td>111</td><td></td><td></td><td>111</td><td></td></tr><tr><td>다둥이가족 페스티벌</td><td>2020.01.01~12.31</td><td>100</td><td>100</td><td>100</td><td></td><td></td><td>100</td><td></td></tr></table>	구 분	사업 기간	2019년 예산액	2020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인건비	2020.01.01~12.31	313	360	360			360		기본경비	2020.01.01~12.31	214	243	243			243		시설지원사업 등	2020.01.01~12.31	176	111	111			111		다둥이가족 페스티벌	2020.01.01~12.31	100	100	100			100	
구 분	사업 기간					2019년 예산액	2020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인건비	2020.01.01~12.31	313	360	360			360																																												
기본경비	2020.01.01~12.31	214	243	243			243																																												
시설지원사업 등	2020.01.01~12.31	176	111	111			111																																												
다둥이가족 페스티벌	2020.01.01~12.31	100	100	100			100																																												
출 연 필요성	○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달성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 출연금 교부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0조(재정 지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1조(출연금 교부)																																																		

사업부서의 견 (총평)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와 군정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등 재단설립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음.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둥이 가족 페스티벌을 2020년도에도 달성복지재단 에서 주관할 예정이며, ○ 또한, 모금 및 배분사업,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군민에게 내실 있는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 다양화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노인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36개 수탁시설 복지 종사자 자질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 복지재단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출연금을 교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의견

- 2020년 출연금 814백만 원 교부로 재단 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
- 보육팀장 추가 채용 및 기본 인상률 적용하여 인건비 증액
 - 사무실 이전 예산을 삭감하고 사회보험 인상률에 맞춰 복리후생비 증액
 -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사무실 공공요금을 추가 편성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원장) 전문교육 예산 추가 편성

2. 출연금 검토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최종) (A)	2020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B)	부서 검토액(C)	증감 (C-B)	전년대비 증감액(C-A)
총 계	530	803	814	814	0	11
인건비	308	313	360	360	0	47
기본경비	144	214	243	243	0	29
홍보사업		5	3	3	0	△2
시설지원	58	73	60	60	0	△13
수탁시설전출금		60	30	30	0	△30
조사연구		38	18	18	0	△20
다둥이가족 페스티벌		100	100	100	0	0
10주년 행사	20	0	0	0	0	0

출연기관 현황

기 관 명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전화번호	617-9200	
					홈페이지	www.dswelfare.kr	
설립근거	○ 법 률 : 민법,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조 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연혁	설립연도 : 2008. 10. 15						
임원 (15.9.1 현 재)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대표이사 (비상임)	차준용	前달성문화원 원장			2019.01.18~2021.01.17	
	상임이사	최상진	前달성군청 자치행정국장			2019.01.18~2021.01.17	
	비상임이사	김상근	수경복지재단 이사장			2019.01.18~2021.01.17	
	비상임이사	장창식	前달성군청소년센터관장			2019.01.18~2021.01.17	
	비상임이사	이은진	계명문화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2019.01.18~2021.01.17	
	비상임이사	진덕수	덕수복지재단 이사장			2019.01.18~2021.01.17	
	비상임이사	윤태만	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장			2019.01.18~2021.01.17	
	비상임이사	이미애	사회복지법인 서재어린이집 원장			2019.01.18~2021.01.17	
	비상임이사	조갑연	큰나무집궁중약백숙 대표			2019.01.18~2021.01.17	
	비상임이사	조병로	前달성군청 정책관광국장			2019.01.18~2021.01.17	
	비상임감사	김대근	김대근세무사사무소 대표			2019.01.18~2021.01.17	
	비상임감사	김광환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2019.01.18~2021.01.17	
주요기능	○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복지자원 발굴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 복지 프로그램개발 사업 ○ 복지시설 간 협력 지원 ○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사업 ○ 복지시설 및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사업						
최근3년간 예산현황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재무현황 2018.12.31 기준	자산	2,445백만원
	예산액	1,124 백만원	1,466 백만원	1,413 백만원		부채	50백만원
	지자체 지원액	465 백만원	530 백만원	803 백만원		자본	2,395백만원

II. 검토의견

2020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달성복지재단은 2008. 10. 15 설립되었으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운영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4개 부문으로 시설운영사업, 모금
사업, 배분사업, 기획사업으로 구분되고, 배분사업으로는 지정·
결연을 통한 후원, 저소득 가정지원을 추진하고,
시설운영사업으로는 노인복지관, 청소년센터, 자원봉사센터,
시니어 클럽, 국공립 어린이집 등 36개 수탁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 2020년 출연사업 예정금액은 814백만원으로 2019년 803백만원
보다 11백만원 증액된 계획이며,
복지재단의 설립취지에 부합되도록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달성복지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상위 및 관계 법령(발췌)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1조 (출연금 교부)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020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11월 11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2020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재)달성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 763백만 원
 - 내실 있는 재단 운영을 위한 경비
 -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 (재)달성문화재단 사업비 출연 : 2,355백만 원
 - ‘건전한 문화예술 선도’의 비전선포를 비롯한 각 사업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통하여 달성군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
 - 특히, 달성 100대 피아노, 달성 대구현대미술제의 경우 달성군의 문화브랜드로 자리매김하여 지역의 홍보 및 가치를 올리는 데 기여
- (재)달성문화재단 기본재산 적립금 출연 : 2,000백만 원
 - ※ 연도별 기본재산 적립금 현황(2019년까지 총 6,000백만 원)
 - 2011 : 2,000백만 원
 - 2013 : 1,000백만 원
 - 2015 : 1,000백만 원
 - 2016 : 1,000백만 원
 - 2017 : 1,000백만 원

- 붙 임
1. 출연 심의요구서
 2. 사업부서 검토의견
 3. 출연기관 현황

출연 심의요구서

출연 대상

○ 기관명 : (재)달성문화재단
○ 대 표 : 김문오
○ 소재지 :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 2길 188

출연 사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5,118백만원(군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2019년 예산액 <최종>	2020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합 계		2,233	5,118	5,118			5,118	
인력운영비	1~12월	98	575	575			575	
기본경비	1~12월	0	188	188			188	
달성 100대 피아노	9월	550	650	650			650	
달성 대구현대 미술제	9월	400	500	500			500	
달성스토리텔링	1~12월	220	250	250			250	
달성군립합창단 운영	1~12월	95	95	95			95	
달성음악회	1~12월	240	240	240			240	
예술자치구역	1~12월	130	150	150			150	
문화기획지원	1~12월	270	120	120			120	
성악중창페스티벌	12월	90	90	90			90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사업	1~12월	50	0	0			0	
도동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기념 음악회	9월	90	0	0			0	
달천예술창작공간 운영	1~12월	0	65	65			65	
2020 도동페스타	1~12월	0	135	135			135	
달성문화재단 10주년 기념책자발간	1~12월	0	60	60			60	
기본재산 적립금	1~12월	0	2,000	2,000			2,000	

출연 필요 성	○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문화기반시설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지원 ○ 타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예술 사업추진으로 달성의 문화위상을 제고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 부서 의견 (총평)	○ 지역의 주요 문화자원 발굴을 통한 자산가치 증대 ○ 문화예술 중심도시 브랜드 가치 창출 ○ 각종 신규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의 창조적 발전에 기여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한국정책평가연구원, '19. 4. 19. ~ 6. 12.)

－ 2019년(2018년 실적) 경영실적 평가결과 : A등급(91.28점)

평가분야	평가배점(%)	평가점수	비고
리더십·전략	10	9.03	• 리더십 지표 • 전략 지표
경영시스템	25	23.42	• 운영 적절성 지표 • 인사·조직 지표 • 재무관리 지표 • 예산관리 지표
경영성과	40	35.99	• 사업지표 • 사업성과 적절성 지표 • 고객만족 지표
사회적가치	15	13.08	• 일자리 확대 지표 • 사회적 책임 지표
정책 준수	10	9.76	• 공공기관 정책 준수 지표 • 지자체 정책 준수 지표
총 점	100	91.28	

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의견

○ 2020년 출연금 5,118백만 원 교부로 재단 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763백만 원

－ 2020 달성 100대 피아노 등 자체사업비 2,355백만 원

－ 기본재산 적립금 2,000백만 원

3.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 <최종> (A)	2020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 (B)	부서 검토액 (C)	증감 (C-B)	전년대비 증감액 (C-A)
총 계	2,002	2,233	5,118	5,118	—	2,885
기관운영비	709	98	763	763	—	665
인력운영비	403	98	575	575	—	477
기본경비	306	0	188	188	—	188
자체사업비	1,293	2,135	2,355	2,355	—	220
달성 100대 피아노	455	550	650	650	—	100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193	400	500	500	—	100
달성스토리텔링	187	220	250	250	—	30
달성군립 합창단 운영	74	95	95	95	—	0
달성음악회	159	240	240	240	—	0
예술자치구역	—	130	150	150	—	20
문화기획 지원	—	270	120	120	—	△150
성악중창페스티벌	89	90	90	90	—	0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사업	—	50	-	-	—	△50
도동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기념 음악회	—	90	-	-	—	△90
달천예술창작공간 운영	—	-	65	65	—	65
2020 도동페스타	—	-	135	135	—	135
달성문화재단 10주년 기념책자 발간	—	-	60	60	—	60
아이조아페스티벌	136	-	0	0	—	0
기본재산 적립금	—	—	2,000	2,000	—	2,000

출연기관 현황

기 관 명	(재)달성문화재단				전화번호	053.659.4271	
					홈페이지	www.dsart.or.kr	
설립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주요연혁	2011. 05. 17. 등기						
임원 (19.11.1 현재)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김문오	달성군수			재임기간	
	대표이사	서정길	現 달성복지재단 이사장			2018.8.20.~2020.08.19	
	비상임이사	이치우	한국예총대구연합회 부회장			2018.8.23.~2020.8.22	
	비상임이사	김정화	계명문화대학교 부교수(생활음악)			2018.8.23.~2020.8.22	
	비상임이사	서규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운영자문위원회			2018.8.23.~2020.8.22	
	비상임이사	전유진	비슬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2018.8.23.~2020.8.22	
	비상임이사	표준식	달성군 정책관광국장			재임기간	
	감사	김창현	김창현회계사무소 대표			2018.8.23.~2020.8.22	
	감사	김진천	달성군 문화체육과장			재임기간	
주요기능	○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과 개최 ○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기획 및 운영						
최근3년간 예산현황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재무현황 2018.12.31 기준	자산	7,165백만원
	예산액	5,522	4,213	4,866		부채	128백만원
	지자체 지원액	4,365	3,190	3,393		자본	7,037백만원

1. 예산액은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2. 지자체 지원액은 해당 기관 예산액 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출연금, 민간위탁금 등)

II. 검토의견

2020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달성문화재단은 2011년 5월에 설립등기 하였고,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설립 및 운영기준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주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달성문화재단에 매년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 출연금 계획을 살펴보면 총 5,118백만원으로
 - 기관운영비로 763백만원,
 - 자체사업비로 2,355백만원
 - 기본재산 적립금으로 2,000백만원입니다.
-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달성 군립합창단 운영, 달성 100대 피아노,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달성음악회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문화예술 사업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문화
예술의 창달과 달성문화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계획대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020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11월 11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2020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재)달성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 4,000백만 원
 -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4,000백만 원
 - 학업성적이 우수하지만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업을 계속하기 힘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달성군 출연금 4,000백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증자
 - 기본재산 이자수익을 통한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인재들의 면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달성군을 빛낼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 및 양성

- 붙 임
1. 출연 심의요구서
 2.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3. 출연기관 현황

출연 심의요구서

출 연 대 상	○ 기 관 명 : (재)달성장학재단 ○ 대 표 : 김 문 오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 기본재산 : 19,891백만원																												
출 연 사업비	○ 출연 예정금액 : 4,000백만원(군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백만원)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사업 기간</th><th rowspan="2">2020년 요구액</th><th colspan="5">재 원 별</th></tr><tr><th>계</th><th>국비</th><th>시비</th><th>군비</th><th>기타</th></tr><tr><td>장학사업 (기본재산 증자)</td><td>2020. 1.~12.</td><td>4,000</td><td>4,000</td><td>-</td><td>-</td><td>4,000</td><td>-</td></tr></table>								구 분	사업 기간	2020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장학사업 (기본재산 증자)	2020. 1.~12.	4,000	4,000	-	-	4,000	-
구 분	사업 기간	2020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장학사업 (기본재산 증자)	2020. 1.~12.	4,000	4,000	-	-	4,000	-																						
출 연 필요성	○ (재)달성장학재단 정관 제4조(사업) 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현금예치에 의한 이자수익사업으로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함. ○ 현재 장학기금으로는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장학금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증가인구에 맞게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장학금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조성목표 : 2020년 40억, 2021년 30억, 2022년 30억, 2021년 5억원 [(재)달성장학재단 기본재산 목표액 300억원]																												
근 거 법 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부서의 견 (총평)	○ 우리 군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면학 분위기를 높이기 위하여 출연금을 증자, 전국 최고 규모의 장학기금을 조성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 외부기관 지적사항

- (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
- － 해당사항 없음

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의견

- (재)달성장학재단 기본재산 증자를 위한 달성군 출연 : 4,000백만 원
- －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4,000백만 원
- － 급증하는 달성군민과 더불어 장학금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군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을 증자하여, 더 많은 이자수익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고자 함.

3. 출연금 검토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출연액	2019년 예산액(최종) (A)	2020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B)	부서 검토액 (C)	증감 (C-B)	전년대비 증감액 (C-A)
총 계	3,010	3,320	4,000	4,000	0	680
기관운영비	해	당	사	항	없	음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장학사업 (기본재산 증자)	3,010	3,320	4,000	4,000	0	680

출연기관 현황

기관명	(재)달성장학재단				전화번호	053-668-3982	
					홈페이지	없음	
설립근거	○ 법 률 :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 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연혁	○ 설립년도 : 2000년 ○ 설립허가 년월일 : 2000. 4. 4. ○ 법인성립 년월일 : 2000. 4. 26.						
임원 (19.11.1 현재)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김문오	달성군수(당연직)			2010. 7. 1 ~ 재임기간	
	비상임이사	정기호	농협달성군지부장(당연직)			2018. 1. 1 ~ 재임기간	
	비상임이사	석재추	前 옥포면영회 회장			2019. 6. 21~ 2023. 6. 20	
	비상임이사	서정우	前 달성군의원			2016.12.24 ~ 2020.12.23	
	비상임이사	곽두섭	前 유가농협장			2016.12.24 ~ 2020.12.23	
	비상임이사	박명규	前 자유총연맹 달성군지부장			2016.12.24 ~ 2020.12.23	
	비상임이사	김길중	자동차보험			2016.12.24 ~ 2020.12.23	
	비상임이사	김성제	달성군체육회 수석부회장			2016.12.24 ~ 2020.12.23	
	비상임이사	신창섭	자영업			2016.12.24 ~ 2020.12.23	
	비상임이사	김동조	가창새마을금고이사장			2016.12.24 ~ 2020.12.23	
	비상임이사	이대현	농업			2016.12.24 ~ 2020.12.23	
	비상임이사	박지팔	구지사회안전망 구지면 회장			2016.12.24 ~ 2020.12.23	
	비상임감사	채수열	前 현풍고 행정실장			2019. 6.21 ~ 2021. 6.20	
	비상임감사	임동화	달성군 회계과장(당연직)			2019. 7. 1 ~ 재직기간	
주요기능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달성군을 빛낼 훌륭한 인재들의 면학을 돕기 위한 장학사업과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훌륭한 인재를 발굴,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최근3년간 예산현황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재무현황 2019.11.1. 기준	자산	19,891백만원
	예산액 (기본재)	5,000백만원	3,010백만원	3,320백만원		부채	-
	지자체 지원액	5,000백만원	3,010백만원	3,320백만원		자본	19,891백만원

1. 예산액은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2. 지자체 지원액은 해당 기관 예산액 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II. 검토의견

2020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재)달성장학재단은 2000년 4월에 법인설립 되었으며,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학생들의 면학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장학금 지급 및 운영에 대해서는 (재)달성 장학재단 정관 제4조 (사업)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현금예치에 의한 이자수익사업으로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대상사업에 범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 2020년도 출연사업비는 4,000백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달성장학재단 정관에 따라 장학금지급을 위하여 현금예치에 의한 이자수입 사업으로 경비를 조달함에 있어 최근, 우리 군의 인구 증가와 금융기관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기본재산의 증자를 위한 출연금의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출연) ①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군수가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020년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자 : 달성군수

2. 제안이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지방재정 운영 및 예산편성 방향

- ☐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입 예측 가능한 세입추계를 최대한 계상 하였고, 세출예산은 생활 SOC사업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등 사회적 가치 제고 및 포용적 안전망 강화에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 ☐ 활력 있는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과 함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자율과 책임의 조화 속에 건전재정을 바탕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추진능력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함.

4. 예산총괄

1) 예산총액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구성비(%)	비 고
총 계		769,000	100.00	
일 반 회 계		760,000	98.83	
특 별 회 계		9,000	1.17	
	기 타 특 별 회 계	9,000	1.17	
	폐기물처리시설사업	2,767	0.36	
	의 료 급 여 기 금	663	0.09	
	기 반 시 설	118	0.02	
	치 수 사 업	5,452	0.71	

2)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장 관 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총 계		769,000	719,300	49,700	6.91
일반회계	합 계	760,000	710,000	50,000	7.04
	지 방 세 수 입	177,676	162,698	14,978	9.21
	세 외 수 입	34,488	32,951	1,537	4.66
	경상적 세외수입	24,162	24,297	△135	△0.56
	임시적 세외수입	10,326	8,654	1,672	19.32
	지 방 교 부 세	143,850	125,500	18,350	14.62
	조 정 교 부 금 등	29,000	47,058	△18,058	△38.37
	보 조 금	304,535	259,721	44,814	17.25
	국고 보조금 등	202,083	181,570	20,513	11.30
	시·도비보조금등	102,453	78,151	24,302	31.1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0,451	82,072	△11,621	△14.16
특별회계	합 계	9,000	9,300	△300	△3.23
	세외수입	118	121	△3	△2.88
	경상적세외수입	87	90	△3	△3.87
	임시적세외수입	31	31	0	0.00
	보 조 금	573	520	53	10.17
	국고보조금등	458	416	42	10.17
	시·도비보조금등	115	104	11	10.1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309	8,659	△350	△4.04

3)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

■ 기 능 별

(단위 : 백만원)

구분	분야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769,000	719,300	49,700	6.91
일반회계	계	760,000	710,000	50,000	7.04
	일반공공행정	44,081	44,205	△124	△0.28
	공공질서및안전	2,908	12,003	△9,095	△75.77
	교육	11,573	10,940	633	5.79
	문화 및 관광	37,636	41,266	△3,630	△8.80
	환경	24,793	19,643	5,150	26.22
	사회복지	296,262	251,589	44,673	17.76
	보건	28,004	16,358	11,646	71.20
	농림해양수산	45,339	42,650	2,689	6.3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754	2,512	242	9.68
	교통및물류	89,054	109,352	△20,298	△18.56
	국토및지역개발	63,415	50,728	12,687	25.01
	예비비	3,716	18,789	△15,073	△80.22
	기타	110,465	89,965	20,500	22.79
특별회계	계	9,000	9,300	△300	△3.23
	환경	2,767	2,767	0	0.00
	사회복지	470	420	50	11.90
	국토및지역개발	5,280	5,650	△370	△6.54
	기타	483	463	20	4.20

■ 성 질 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769,000	719,300	49,700	6.91
계		760,000	710,000	50,000	7.04
인 건 비		85,611	79,034	6,577	8.32
물 건 비		44,033	40,682	3,351	8.24
	일 반 운 영 비	32,383	30,289	2,094	6.91
	여 비	2,850	2,842	8	0.27
	업 무 추 진 비	729	709	20	2.86
	직무 수행 경비	2,411	2,160	251	11.63
	의 회 비	579	553	26	4.73
	재 료 비	2,344	2,338	6	0.26
	연 구 개 발 비	2,737	1,791	946	52.81
경 상 이 전		403,392	347,134	56,258	16.21
자 본 지 출		201,586	217,562	△15,976	△7.34
	시설비및부대비	181,109	198,808	△17,699	△8.90
	민간 자본 이전	9,974	10,892	△918	△8.42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434	1,576	858	54.38
	공사공단자본전출금	810	738	72	9.82
	자 산 취 득 비	7,259	5,548	1,711	30.84
융자 및 출자		10	10	0	0.00
내 부 거 래		21,637	6,779	14,858	219.16
예비비 및 기타		3,731	18,799	△15,068	△80.16
특 별 회 계	계	9,000	9,300	△300	△3.23
	인 건 비	403	373	30	7.89
	물 건 비	29	42	△13	△29.94
	경 상 이 전	450	400	50	12.50
	자 본 지 출	260	260	0	0.00
	예비비 및 기타	7,858	8,225	△367	△4.46

5. 주요내용

■ 예산규모

- 202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7,193억원 보다 497억원(6.91%)이 늘어난
7,690억원으로
-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7,100억원 보다
500억원이 증가된 7,600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 93억원 보다 3억원이 감소한 90억원입니다.

■ 세입예산

□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에 있어

- 지방세 1,776억 8천만원으로 23.38%이며,
세외수입 344억 9천만원으로서 4.54%이고,
지방교부세 1,438억 5천만원으로 18.93%,
조정교부금등 290억원으로 3.82%,
보조금은 3,045억 3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0.0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04억 5천만원으로 9.2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주민세는 전년대비 12억 늘어난 110억원
재산세는 전년대비 17억 감소한 472억원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29억 늘어난 400억원
담배소비세 전년과 동일한 150억원

지방소비세로 2020년분 조정교부금 보전분 423억원
전환사업 보전분 378억원
지방소득세 540억원, 지난해도수입 25억원 등
총 150억원의 지방세가 증가되어
1,776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15억 4천만원원 늘어난
344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41억 6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03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83억 5천만원 늘어난
1,438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 조정교부금등은 180억 6천만원이 감소한
29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이 205억 1천만원 늘어난
2,020억 8천만원,
시·도비보조금등 243억원이 늘어난 1,024억 5천만원으로
총 3,045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704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세출예산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로 6,495억 3천만원,
재무활동비로 216억 5천만원,
행정운영경비로 888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분야별로는

- 일반공공행정분야에 0.28% 감소한 441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75.77% 감소한 29억원
- 교육분야에 5.79% 증가된 116원
- 문화 및 관광분야에 8.80%가 감소한 376억원
- 환경분야에 26.22% 증가한 248억원
- 사회복지분야에 17.76% 증가된 2,963억원
- 보건분야에 71.20% 증가한 280억원
- 농림해양 수산분야에 6.30%가 증가된 453억원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 9.68% 증가된 28억원
- 교통 및 물류분야에 18.56% 감소된 891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5.01% 증가된 634억원
- 예비비·기타 1,14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에서는

인건비는 보수 510억 3천만원, 기타직보수 26억 6천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55억 4천만원,
기간제근로자보수 163억 8천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8.32% 증가된 856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등의 소폭 증가와
연구개발비 9억 5천만원(52.81%)이 증가하여
총 33억 5천만원(8.24%)이 증가한
440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이전 경비는 2019년대비 562억 6천만원이 늘어난
4,03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1,811억, 민간자본이전 99억 7천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4억 3천만원,
공사공단자본전출금 8억 1천만원, 자산취득비 72억 6천만원 등
총 2015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민간융자금 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부거래는 기타회계등전출금에서 3천만원,
기금전출금에서 2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37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읍·면 예산의 경우

- 읍·면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
읍장은 360만원, 면장은 240만원,
다사읍의 경우 과장 240만원, 다사읍장 9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 읍·면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 또한 전년도와 동일하게
읍은 3억5천만원, 면은 2억8천만원으로 일괄 편성하였고,

- 전체적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와 청사관리 등 시설유지관리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규모는 화원 58억여원, 논공 46억여원, 다사 60억여원, 유가 40억여원, 옥포 40억원, 현풍 35억여원, 가창 31억여원, 하빈 27억여원, 구지 30억여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읍면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전체적으로 4개 특별회계에 전년대비 3억원이 감소된 9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동일한 27억 6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고,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천 3백만원 증가된 6억 6천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억 1천 8백만원,
-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억 5천 6백만원이 감소된 54억 5천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종합검토의견

○ 2020년도 재정운용 여건을 보면

<세입여건>은

- 공동주택 입주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세, 재산세 등 대부분 군세는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산업단지 입주업체 증가로 지방소득세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일본 수출규제 등에 따른 법인세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 세외수입은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강화, 지방세의 수입 운영실적 분석, 진단 내실화 등으로 예년보다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아울러, 대내외 경기 하방 요인으로 국세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가운데, 지방교부세 증가폭도 함께 축소 전망되나,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보험 등 의무 지출 및 복지 지출 등으로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수입은 다소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여건>은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기초연금,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 등 정부의 주요복지정책에 따른 의무적 부담경비 증가로 사회복지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 증가가 예상되며,
- 최상의 교육과 보육체계 개선, 권역별 공공시설물 건립 등 생활 SOC, 미세먼지 저감, 농축산 부문 경쟁력 강화, 비슬산 및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 조성 등 지역기반 확충을 위한 지출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비중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38.98%로 가장 비중이 많으며, 교통 및 물류 예산이 11.72%, 국토 및 지역개발이 8.34%이고, 농림해양수산업이 5.97%, 일반공공행정이 5.80%, 문화 및 관광이 4.95% 순입니다.
-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치는 등 예산편성의 절차이행에 노력하였으며 사전절차에 누락된 대상사업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복지를 증대하기 위해 건설도시 부문 및 생활SOC 등 사회기반 및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배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에 있어서는 총액 범위 준수 및 지원 근거에 맞게 내실있는 지원 및 집행결과에 대한 철저한 정산 등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사업예산의 경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및 지역 균형 예산 편성 등,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소통하여 사업의 형평성,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며
-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합법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검증하고,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연도 내에 집행 가능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주의가 요구됩니다.
-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의 운영을 위해 수입·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 독립적으로 회계처리 하는 회계로써 특별회계의 목적을 다하고 있는지 또한, 효율적 예산운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자 : 달성군수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언고자 함.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
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기금의 설치근거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각 기금별 설치근거 조례

3. 기금의 개요

(1) 기금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가장 큰 가치를 두어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함.

(2) 운용방침

- 기금의 사업효과 및 성과 결과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계획 수립
- 여유자금의 활용 및 합리적인 운용으로 지역안정화 기능 강화

(3) 기금의 현황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비고
재정 안정화 기금	2018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	지방재정법 제14조,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예산실	
식품진흥 기금	2001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시 필요한 재원 충당	「식품위생법」 제89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소위생과	
자활기금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 증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및동법시행령 제26조의2,대구광역시 달성군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생활보장과	
재난관리 기금	2005	재난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안정적 확보와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 활용을 위하여 적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안전방재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2018	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건축과	
체육진흥 기금	1999	군민들의 체력 증진 및 지역 체육 발전에 필요한 사업 추진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제10조	문화체육과	

(4) 기금운용계회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수 입 계 회							지 출 계 회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수(이자포함)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비용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합 계	37,734	21,607	330	2	15,431	275	90	37,734	1,050	30	36,287	367
재정안정 화기금	25,388	20,000	0	0	5,300	88	0	25,388	0	0	25,388	0
식품진흥 기금	241	0	30	0	129	6	76	241	80	0	93	67
자활기금	835	0	0	2	806	13	14	835	10	30	795	0
재난관리 기금	10,001	1,507	0	0	8,340	154	0	10,001	940	0	9,061	0
옥외광고 발전기금	502	100	300	0	100	2	0	502	0	0	202	300
체육진흥 기금	768	0	0	0	756	12	0	768	20	0	748	0

(5)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9년도말 조성액 ㉑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㉒=㉑+㉓-㉔	증 감 ㉕=㉒-㉑
		수입㉓	지출㉔		
합 계	15,431,319	22,302,823	1,447,140	36,287,002	20,855,683
재정안정화 기금	5,300,000	20,087,980	0	25,387,980	20,087,980
식품진흥 기금	129,085	111,500	147,140	93,445	△35,640
자활 기금	805,681	28,898	40,000	794,579	△11,102
재난관리 기금	8,340,453	1,660,733	940,000	9,061,186	720,733
옥외광고 발전기금	100,000	401,760	300,000	201,760	101,760
체육진흥 기금	756,100	11,952	20,000	748,052	△8,048

(6) 기금별 주요내용

□ 재정안정화기금

○ 지원대상

-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등

○ 2020년 주요사업

-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25,387,980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8년도말 현재액	2019년도말 현재액㉑	2020도말 현재액㉒	증 감 (㉒-㉑)	
예치금	대구은행	0	5,300,000	25,387,980	20,087,980	

□ 식품진흥기금

○ 지원대상

- 달성군에 사업장을 둔 식품위생업자 및 관련 단체
-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신고자 보상금

○ 2020년 주요사업

- 모범음식점 지원 (120개소) 12,000천원
- 제9회달성(향토·전통)음식경연대회 지원 30,000천원
- 나트륨줄이기 사업 지원 10,000천원
- 뮤지컬로 배우는 음식문화개선 10,000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8년도말 현재액	2019년도말 현재액(a)	2020년도말 현재액(b)	증 감 (b-a)	
합 계		162,725	129,085	93,445	△35,640	
예치금	대구은행	90,000	90,000	90,000	0	정기예금
	대구은행	72,725	39,085	3,445	△35,640	보통예금

□ 자활기금

○ 지원대상

- 달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실시 기관

○ 2020년 주요사업

- 점포 전세금 대여 30,000천원
-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및 소양직무 교육 10,000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8년도말 현재액	2019년도말 현재액 ㉠	2020년도말 현재액 ㉡	증 감 (㉡-㉠)	
예치금	대구은행	841,555	805,681	794,579	△11,102	

□ 재난관리기금

○ 지원대상

- 달성군 전 지역

○ 2020년 주요사업

- 재해예방 홍보(팜플렛, 현수막 등)제작 10,000천원
- 내진성능 평가 150,000천원
- 재해예방 및 긴급 복구를 위한 자재구입 300,000천원
- 읍면별 재해예방 및 긴급 복구 사업비 450,000천원
- 시설장비 구입 30,000천원, 예치금 9,061,186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8년도말 현재액	2019년도말 현재액㉠	2020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8,331,143	8,340,453	9,061,186	720,733	
예치금	대구은행	31,143	40,453	761,186	720,733	
	대구은행	1,000,000	1,000,000	1,000,000	0	
	대구은행	500,000	500,000	500,000	0	
	대구은행	500,000	500,000	500,000	0	
	대구은행	1,000,000	1,000,000	1,000,000	0	
	대구은행	300,000	300,000	300,000	0	
	대구은행	500,000	3,000,000	3,000,000	0	
	대구은행	1,000,000	2,000,000	2,000,000	0	
	대구은행	1,000,000	0	0	0	
	대구은행	1,000,000	0	0	0	
	대구은행	1,000,000	0	0	0	
	대구은행	300,000	0	0	0	
	대구은행	200,000	0	0	0	

□ 옥외광고발전기금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에 따른 대상

○ 2020년 주요사업

- 일반회계 전출금 (간판정비 사업 등) 300,000천원
-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201,760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8년도말 현재액	2019년도말 현재액 ㉠	2020년도말 현재액 ㉡	증 감 (㉡-㉠)	
예치금	대구은행	0	100,000	201,760	101,760	

□ 체육진흥기금

○ 지원대상

- 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 지원
-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등 국내·외 대회 참가 지원 및 격려
- 유소년·청소년 체육특기자 발굴 육성 및 지원
- 기타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지원

○ 2020년 주요사업

- 지역 체육진흥 사업 : 20,000천원, 예치금 748,052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8년도말 현재액	2019년도말 현재액 ㉠	2020년도말 현재액 ㉡	증 감 (㉡-㉠)	
예치금	대구은행	765,012	756,100	748,052	△8,048	

(7) 종합검토의견

- 기금의 정의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각 기금별 설치근거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 기금은 특수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의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합니다.
- 기금운용의 원칙은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의회차원에서 기금 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를 요구하여 왔습니다.
- 당분간 우리군의 기금운용은 법정기금인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과 특수한 목적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자활기금, 재정안정화기금 등 모두 6개의 기금이 운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 최근 개정된 법률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이 설정된 만큼 기금 운영에 내실을 기함과 아울러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붙임 : 1.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 지방자치법

-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